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에 규정된 용어 및 그 정의가 적용된다.

제6.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에 의하여 당사자들 간 상품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제고하는 것
- 다. 각 당사자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라. 관련 국제기관의 작업을 포함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당사자들 간 정보 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
- 마. 이 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 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자들 간 상품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정부기관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나.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구매 규격

2. 각 당사자는 이 장을 이행할 때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을 담당하는 그 당사자의 영역 내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용 가능한 그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및 이 장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6.4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및 통합

1. 각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다음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가.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을 제외한 제2조

나. 제4조제2항

다. 제4항을 제외한 제5조

라. 제6조제3항

마. 제9조제1항, 그리고

바. 제1항을 제외한 부속서 3

2. 제1항에 따라 통합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규정과 이 장의 그 밖의 규정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제1항에 따라 통합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규정의 위반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분쟁에 대해서 제19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6.5조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

1. 당사자들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국가 표준을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축소하는 데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와 제5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자는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2000년 11월 13일자 G/TBT/9 부속서 4)에 규정된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채택한 후속 관련 결정 및 권고를 고려한다.

3.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와 같은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의 국제 표준 및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조정과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한다.

제6.6조

표준

1.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국가 표준을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 자신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3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2. 당사자의 국가 표준을 개발할 때 관련 국제 표준의 내용 또는 구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표준화기관이 그 내용 및 구조의 차이가 무엇인지와 그러한 차이의 이유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이 서비스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실제 송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하다.
3. 제2항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표준화기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국제 표준의 내용 및 구조의 수정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보장한다.
4.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신의 영역에 있는 관련 표준화기관과 다른 당사자들의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장려한다.

가. 표준 관련 정보의 교환

나. 표준 제정 절차 관련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활동

제6.7조

기술규정

1. 각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4항에 규정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신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당사자가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자신의 기술규정의 기초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설명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을 이행할 때 각 당사자는 채택이 될 제안된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대안을 고려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자신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신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4.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기술규정을 자신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8항을 이행할 때 당사자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생산품 요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유를 제공한다.

6.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수출 당사자의 생산자가 수입 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생산품 또는 생산방식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공표와 그 발효 간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이 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시간 간격”은 기술규정에 의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7. 다른 당사자의 기술규정과 유사한 기술규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는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그 당사자가 개발 시 의존한 연구 또는 문서를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8. 각 당사자는 자신의 중앙정부기관이 준비하고 채택한 기술규정을 자신의 전체 영역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지방정부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6.8조

적합성 평가절차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4항에 더하여,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그 관련 부분이 특히 국가안보 요건,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이나 환경 보호, 근본적 기후 또는 그 밖의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 또는 기반시설상의 문제와 같은 이유로 관련 당사자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요청에 따라 적절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정부기관이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관련 부분을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기초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적합성 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며, 비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신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평가절차의 결과가 수용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상황 및 관련된 특정 분야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해당 당사자들의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

나. 해당 당사자들의 인정기관 간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적(자발적) 약정

다.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부여된 인정을 인정하기 위하여 관련 다자 간 협정 또는 약정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

라. 다른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마.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정, 그리고

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6.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은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의 개발 및 적용을 포함하여 그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험을 공유한다.

7. 당사자들은 적합성 평가분야의 협력에서 지역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이 협력을 촉진할 때 당사자들의 관련 기관의 그러한 기구에 대한 참여 지위 또는 회원 자격을 고려한다.

8.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관련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하도록 장려할 것에 합의한다.

9. 각 당사자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적합성 평가기관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기관이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10.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적합성 평가절차에 자신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참여는 허용하고 다른 당사자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거부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9조

협력

1. 당사자들은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게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2.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협력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3. 그러한 협력은 상호 결정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적용에 관련된 조언, 기술지원 또는 역량강화
 - 나. 상호 관심사안에 관한 당사자들의 정부 및 비정부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 다. 관련 지역기관 및 국제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상호인정 체계에 대한 참여 강화와 같이 관련 지역기관 및 국제기관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적용에 관련된 업무에서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 라.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개선을 위한 협력 제고, 그리고
 - 마.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및 그 밖의 관련 국제 또는 지역 포럼에서의 의사소통 및 조정 강화
4.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분야별 제안을 고려한다.

제6.10조

기술 논의

1. 당사자가 무역 및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사안을 해결할 필요를 고려할 때 그 당사자는 서면으로 기술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응답한다.
2.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피요청당사자는 해당 당사자들에 의하여 달리 상호 결정되지 않는 한 요청당사자와 60일 내에 기술 논의를 개시한다. 기술 논의는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6.11조

투명성

1. 당사자들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1995년 1월 1일 이래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G/TBT/1/Rev.13)의 관련 결정 및 권고사항을 고려한다.
2. 서면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영어로 작성된 전문 또는 요약본을 이미 이용 가능한 경우에 요청당사자에 제공한다.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는 통보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요건을 영어로 기술한 요약본을 해당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서면 요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요청당사자에 제공한다. 앞 문장을 이행할 때, 요약본의 내용은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가 채택했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당사자는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및 제5조제6항에 따라 그 밖의 당사자들이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

로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날부터 60일을 허용한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요청에 따라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인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의 인이 자신의 기술규정, 국가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을 위하여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협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6. 당사자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비준수로 인하여 수입된 탁송물을 입국 지점에서 유치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유치 사유를 통보한다.

7.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해당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경우 60일 내에 피요청당사자에 의하여 인쇄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요청에 따라, 피요청당사자는 그러한 정보 또는 설명을 해당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언어나 언어들로, 또는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영어로 제공한다.

제6.12조

접촉선

1.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장의 이행의 조정을 담당하는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그 밖의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그 접촉선의 하나 또는 복수의 관련 공무원의 세부 연락사항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세부 연락사항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하게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정보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대응하여 당사자들 간에 그러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도록 보장한다.

제6.13조 이행 약정

당사자들은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한 상호 관심 협력분야를 규정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 간 약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그러한 약정을 채택한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경우 그러한 약정을 상품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장려된다.

제6.14조 분쟁해결

제19장(분쟁해결)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적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째 되는 날에 당사자들의 검토 대상이 된다. 이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이 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제19장(분쟁해결)의 적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그러한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내에 완료된다.